

1. 개정이유

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,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2.6.10.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기관 추가(안 제6조제1항)

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
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(생 략) <신 설> 2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	제6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<u>이집</u> 3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